

제57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공고

주주님의 건승과 맥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우리회사 정관 제20조에 의하여 제57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액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하여 이 공고로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일 시 : 2015년 2월 17일 (화) 오전 09시

2.장 소 : 경남 양산시 총렬로 355 넥센타이어주식회사 본사 강당

3.회의목적사항

<보고안건> 영업보고 및 감사보고

<부의안건>

제1호 의안 : 제57기(2014년 1월 1일 ~ 2014년 12월31일)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이익잉여금처분(안) 승인의 건

※상기 제1호 및 제2호 의안에 대해서 당사 정관 제44조 제4항, 상법 제449조의2에 의거하여 재무제표의 이사회 승인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재무제표가 확정되는 시점에 이사회에서 승인 하고 주주총회에서는 보고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3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세부내용은 붙임 참조)

제4호 의안 : 사외이사 선임의 건

성 명	생년월일	주요약력	추천인	최대주주와의관계	회사와의거래내역	비 고
전 태 준 (사외이사)	1947년 6월 12일	현, 넥센타이어(주) 사외이사	이사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재선임
신 봉 웅 (사외이사)	1942년 6월 21일	현, 안경회계법인 회장	이사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신규선임
김 유 경 (사외이사)	1958년 6월 15일	현, 한국외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이사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신규선임

제5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성 명	생년월일	주요약력	추천인	최대주주와의관계	회사와의거래내역	비 고
전 태 준 (사외이사)	1947년 6월 12일	현, 넥센타이어(주) 사외이사	이사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신규선임
신 봉 웅 (사외이사)	1942년 6월 21일	현, 안경회계법인 회장	이사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신규선임
김 유 경 (사외이사)	1958년 6월 15일	현, 한국외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이사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신규선임

제6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7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우리회사의 본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팀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금번 우리회사의 주주총회에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314조 제5항 단서규정에 의거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 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 참석장에 의거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2015년 2월 02일

 **넥센타이어주식회사** 

대 표 이 사 이 현 봉 (직인생략)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김 경 동

붙임 - 제3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현행(변경전)	개정(변경후)
제10조 (신주인수권) ①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결의로 정한다. 1. (신설) 2. (신설) 3. (신설)	제10조 (주식의 발행 및 배정) ①이 회사가 이사회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1.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②제1항 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1.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에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4.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현행(변경전)	개정(변경후)
1.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의 범위 내에서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의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4.상법 제340조의2 및 제54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의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6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의 범위 내에서 회사가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의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 재무구조의 개선 기타 경영상의 필요로 국내외 법인 또는 개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④제3항 각호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신설) ⑥(신설) ⑦(신설)	<u>1.(삭제)</u> <u>2.(삭제)</u> <u>3.(삭제)</u> <u>4.(삭제)</u> <u>5.(삭제)</u> <u>6.(삭제)</u> <u>7.(삭제)</u> <u>④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u> <u>⑤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u> <u>⑥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u> <u>⑦회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u>
제10 조의 2(주식매수선택권) ⑦(신설) ⑧(신설) ⑦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제10 조의 2(주식매수선택권) <u>⑦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 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내에 사망하거나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u> <u>⑧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4의 규정을 준용한다.</u> <u>⑨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u>

현행(변경전)	개정(변경후)
제14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이 회사는 매결산기 최종일의 익일부터 15일 동안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와 신탁 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를 정지한다. ②이 회사는 매결산기 종료일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로 하여금 그 권리를 행사하게 한다. ③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 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한 후 3월을 초과하지 않는 일정한 기간에 걸쳐 명의개서 등을 정지하거나 기준일을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명의개서의 정지와 기준일을 함께 정할 수 있다.	제14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이 회사는 매결산기 최종일의 익일부터 15일 동안 <u>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u> ②이 회사는 매결산기 종료일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로 하여금 <u>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하게 한다.</u> ③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 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한 후 3월을 초과하지 않는 일정한 기간에 걸쳐 <u>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명의개서의 정지와 기준일을 함께 정할 수 있다.</u>
제15조의2(전환사채의 발행) ②(신설) ②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③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④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 익일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 4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의 2(전환사채의 발행 및 배정) ②제1항제1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 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 1.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 2.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④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⑤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 익일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⑥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 4의 규정을 준용한다.

현행(변경전)	개정(변경후)
제 16 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②(신설) ②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③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④주식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 익일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 4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6 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및 배정) ②제1항제1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 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 1.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 2.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④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⑤주식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 익일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⑥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 4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25 조 (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이 회사, 이 회사와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 25 조 (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이 회사, 이 회사의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 5 장 이사. 이사회. 감사 제 30 조 (이사 및 감사의 수) ①이 회사는 3명 이상 6명 이내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를 선임한다. 감사중 1명 이상은 상근으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1이상으로 한다. ②이사 및 감사는 그 일부를 외부에서 초빙한 비상근 사외이사, 사외감사로 할 수 있다.	제 5 장 이사. 이사회 제 30 조 (이사의 수) ①이 회사는 3명 이상 6명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 ②이사는 그 일부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비상근 사외이사로 할 수 있다.

현행(변경전)	개정(변경후)
제 31 조 (이사 및 감사의 선임) ①이사와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이사와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u>그러나 감사의 선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u>	제 31 조 (이사의 선임) ①<u>이사는</u>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u>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u> (이하삭제)
(신설)	제 31 조의 2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 ①<u>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상법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한다.</u> ②<u>사외이사 후보의 추천 및 자격심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정한다.</u>
제 32 조 (이사 및 감사의 임기) ②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	제 32 조 (이사의 임기) ②<u>삭제</u>
제 36 조 (감사의 직무)	제 36조 삭제
제 37 조 (감사의 감사록)	제 37조 삭제
제 40 조 (이사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하여 본점에 비치한다.	제 40 조 (이사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u>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u>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 본점에 비치한다.
(신설)	제 40 조의 2(위원회) ①<u>이 회사는 이사회내에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둔다.</u> 1. <u>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u> 2. <u>감사위원회</u> 3. <u>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u> ②<u>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u> ③<u>위원회에 대해서는 제38조,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u>

현행(변경전)	개정(변경후)
제 41 조 (이사 및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이사와 <u>감사의</u>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②이사와 <u>감사의</u>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제 41 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u>이사의</u>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②<u>이사의</u>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신설)	제 6 장 감 사 위 원 회 제 43 조 (감사위원회의 구성) ①이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제4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③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하고, 사외이사 아닌 위원은 상법 제542조의10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에는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⑤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있는 주식의 합계가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⑥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신설)	제 44 조 (감사위원회의 직무 등) ①감사위원회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⑤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현행(변경전)	개정(변경후)
(신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⑥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의 선임에 있어 이를 승인한다. ⑦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6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⑧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신설)	제 45 조 (감사록)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제 6 장 계 산	제 7 장 계 산
제 43 조 (사업년도)	제 46 조 (사업년도)
제 44 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비치 등) ①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이하 생략) ③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간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불구하고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이를 승인할 수 있다. 2.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	제 47 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비치 등) ① 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u>감사위원회에 제출하여</u> 감사를 받아야 하며 (~이하 생략) ③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간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불구하고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이를 승인할 수 있다. 2. <u>감사위원</u>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
제 45 조 (이익금의 처분)	제 48 조 (이익금의 처분)
제 46 조 (이익배당)	제 49 조 (이익배당)
제 47 조 (배당금지청구권의 소멸시효)	제 50 조 (배당금지청구권의 소멸시효)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3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u>2015년 2월 17일부터</u> 시행한다.